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2004910(본소), 2023나2004927(병합),
2023나2026378(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 · 계약자 명의변경 이행 청구 · 자동차인도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2004910(본소), 2023나2004927(병합),
2023나2026378(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가합508156, 2021가합522855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피고, 항소인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안도현

변론 종결 2024. 4. 4.

판결 선고 2024. 5. 3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가합508156, 2021가합522855(병합)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2021. 4.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 1)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 2) 44,279,600원 및 2024. 5. 1.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13,9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그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5%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한다.
 5. 제1의 나.항 및 제3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가) 7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20. 7. 2.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피고 회사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 2019. 4. 30. 체결된 자동차리스 약정서상의 리스이용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주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3.부터 2020. 9. 30.까지 연 1%,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3.부터 2020. 12. 31.까지 연 1%,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3.부터 2021. 2. 27.까지 연 1%,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3.부터 2021. 6. 30.까지 연 1%,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매매대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고(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감축), 대여금 반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나. 반소

주문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47,600,570원 및 2024. 4. 30.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13,9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회사는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를 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 1) 나)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 계약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계약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계약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나. 피고 C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끝 행 내지 제5면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 체결 등

1) 피고 회사는 2019. 4. 30. D과 사이에, D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를 1,106,990원, 기간을 2019. 4. 30.부터 2024. 4. 30.까지 60개월로 하는 운용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0. 9. 29.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회사는 2019. 4. 3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월 리스료를 납부하고 있다.

4)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관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D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피고 회사는 D에 위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 반환지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환지연금은 월 리스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경과일수만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제1심판결문 제6면의 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2조(계약의 내용)

1. 원고는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 주식 9만 주를 피고 회사에 주당 8,000원의 가격으로 양도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7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2020. 7. 2.(이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기일이 지연되게 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도하는 피고 회사 주식의 명의개서와 증권거래신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이후에 이행하기로 한다. 단, 원고와 피고 회사의 합의하에 명의개서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진행한다.
4. 제3항에 따라 명의개서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미지급한 주식매매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금전에 대한 대여금계약으로 전환된다.
 - 1) 대여금: 720,000,000원
 - 2) 이자: 1%
 - 3) 상환기일:

1차	2020. 9. 30.	50,000,000원(오천만 원)
2차	2020. 11. 30.	170,000,000원(일억 칠천만 원)
3차	2020. 12. 31.	100,000,000원(일억 원)
4차	2021. 2. 27.	400,000,000원(사억 원)

- 4)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신사동 가로수길점 임차보증금 5억 원을 담보로 제공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상단의 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2조(계약의 내용)

1. 원고는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 주식 6만 주를 피고 C에게 주당 8,000원의 가격으로 양도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2020. 7. 2.(이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기일이 지연되게 될 경우 상호 합의하에 진행하기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 C에게 매도하는 피고 회사 주식의 명의개서와 증권거래신고는 원고가 피고 C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이후에 이행하기로 한다. 단, 원고와 피고 C의 합의하에 명의개서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진행한다.

4. 제3항에 따라 명의개서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미지급한 주식매매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자금을 대여한 금전에 대한 대여금계약으로 전환된다.

1) 대여금: 480,000,000원

2) 이자: 1%

3) 상환기일:

1차	2020. 9. 30.	10,000,000원(일천만 원)
2차	2020. 12. 31.	70,000,000원(칠천만 원)
3차	2021. 2. 27.	100,000,000원(일억 원)
4차	2021. 6. 30.	300,000,000원(삼억 원)

4)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1행의 "이루어진 상태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담당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를 한 후 2023. 10. 26. 기존 결정을 유지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3. 11. 23. 다시 보완수사요구결정을 하였고, 현재까지 검사의 최종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2행의 "28호증"을 "28, 41호증"으로, 3행의 "21호증"을 "21, 25, 27, 31, 38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이 피고 C 명의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매매대금 지급 이전 명의개서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위 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6,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사에 의하여 신고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는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0, 44 내지 50호증 등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명의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졌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C 명의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주식매매대금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명의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이 원시적 무효라는 주장

(1) 피고 C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0. 19.자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150,000,000원에 매수하되, 현재 자금이 없어 제3자로부터 차용해서 위 금원을 마련하겠다. 다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가 되면 위 150,000,000원을 다시 돌려주고, 이후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1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그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 C은 원고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2018. 10. 19.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C에게 2019. 1. 16. 지급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2019. 6. 24. 피고 C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결국 원고는 피고 C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 C을 기망하여 2018.

10. 19.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은 이를 이유로 2018. 10. 19.자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18. 10. 19.자 주식매매계약은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1. 5. 13.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도달한 무렵 적법하게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 C 명의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은 원시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어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과정이나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 개시 과정에서 별다른 금원을 투자한 적이 없고, 2018. 10. 19.자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한 후 다시 되돌려 받아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9 내지 13, 15, 16, 19, 2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을 기망하여 2018. 10. 19.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 C 명의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의 원시적 무효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2018. 10. 19.자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150,000,000원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기재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의 필요로 인하여 피고 C으로부터 위 금원을 다시 돌려받을 경우에는 가능한 시기에 매매대금을 다시 지급하겠다.'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론할 만한 기재도 찾을 수 없다.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원고는 계약서가 작성된 때인 2018. 10. 19.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9. 1. 16.에서야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2018. 10. 19.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고, 피고 C이 2018. 10. 19.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원고는 2018. 10. 19.자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9. 1. 16.에서야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인 I로부터 2018. 10. 19.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면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후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제1심 증인 I 역시 '2018. 11. 5.경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원고의 주장과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별다른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를 다시 되돌려 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2018. 10. 19.자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한 것과 원고의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 내지 피고 회사 운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② 피고 C은, 피고 C이 원고와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동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금원을 투자한 적도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2018. 10. 19.자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후의 정황에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은 원고가 'F' 대만 본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고, 피고 C에게 제안을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C 및 G은 피고 회사 설립 무렵 원고의 직함이 '피고 회사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만들기도 한 점(갑 제9, 10호증), 원고는 2018. 10. 16.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지점 선정 및 계약 등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해 온 점,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하다면, 위 사업이 초창기에 성공적으로 운영될 무렵 피고 C이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절반을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그 대금으로 자본금의 절반 상당 금액만 지급받기로 하고 양도한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나아가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C, G이 'F' 대만 본사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 3.경 위 계약에 따라 신설될 법인의 지분과 관련하여 피고 C 40%, 원고 30%, G 30%의 비율로 지분을 나누어 취득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무상 취득이 아니라 정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후 원고가 50%의 지분을 매수하고자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C이 2018. 10. 16.경 나눈 대화에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내 이름으로 했다는 것의 중요도를 몰랐다. 이러나 저러나 너와 함께 하는 것인데. 단지 하나 걱정했던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나눌 때 세금을 엄청 많이 낸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초반부터 같이 했었어야 됐다. 초반부터 그거를 같이 올렸어야 됐다.'는 등의 말을 하고, 원고와 피고 C이 2019. 6. 19.경 나눈 대화에서 원고가 피고 C에게 '형식으로 내가 너한테 (지분) 100%를 다 줬던 것처럼 H에게 20% 지분을 주고 내가 80% 지분을 가지면 된다.'라고 말하자 피고 C은 '맞아.'라고 원고의 말을 수긍하였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C이 피고 회사 설립 시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모두 인수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지분 보유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도 지분이 귀속되었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정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원고가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 C은 2018. 6. 30.경 G에게 '지분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이야기 나온 부분이 없다. 너(G)가 말했던 것도 그때 우리 둘이 초반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지 정해진 건 없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 C은 G와의 사이에서만 피고 회사의 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달리 피고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C을 기망하여 2018. 10. 19.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 피고 C 명의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

(1) 피고 C 주장의 요지

2020. 7. 2.자 각 주식매매계약은 2020. 9.경 피고 C의 아버지인 H의 피고 회사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피고 C이 H로 하여금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 직전인 2020. 7. 2. 피고 C에게 환원된 듯한 외관을 작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허위의 문서이다. 따라서 피고 C 명의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C이 2020. 9.경 작성일을 이 사건 가압류 직전인 2020. 7. 2.로 기재하여 2020. 7. 2.자 각 주식매매계약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3, 15, 16, 20 내지 22, 24, 46호증, 을 제12, 2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이 통정하여 허위로 피고 C 명의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H은 2018. 7. 12. 피고 C에게 3억 원, 2018. 8. 28. 피고 C 및 피고 회사에 7억 원을 각 이율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8. 10. 16.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와 피고 C이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원고가 위 대화 이전에 피고 C에게 그만두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피고 C은 H이 너무 욕심을 부린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H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니 원고와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운영이나 수익 배분 등에 관한 H의 지나친 요구로 원고가 불편한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H은 2019. 6.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대여금 합계 10억 원을 투자금으로 변경하되 피고 회사가 H에게 위 10억 원을 모두 상환하며(다만 상환하지 않을 시 피고 회사의 지분 20%를 양수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급된 이자 1억 원 외에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투자금 상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투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투자금을 갚기 위한 돈이 없으니 사채라도 빌려야 한다.'거나 '투자금을 갚지 못하여 H에게 지분 20%를 양도해야 한다면 H의 경영 간섭을 막기 위해 피고 C 보유 지분에서만 20%를 양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H에 대한 위 채무 내지 H의 피고 회사에 대한 관여에 우려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위 문제로 인해 피고 C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 C은 2019. 6. 26. 원고에게, 'H이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 중 피고 C이 가진 몫을 포기해서라도 H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H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것이라며 원고를 안심시킨 것으로 보이나 위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년 말경 투자업체 등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매각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위 매각절차는 중도에 무산되었다. H에 대한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H은 2020. 7. 17. 피고 회사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20. 9.경 법무법인에 위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등 사건의 위임에 관해 의뢰하였으며, 그 무렵 2020. 7. 2.자 각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특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0. 9. 29.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원고는 2020. 12. 초경 G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 자리를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2020. 7. 2.자 각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H에 대한 채무 내지 H의 피고 회사 운영에 대한 관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매각도 반대하여 더 이상 피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고자 하는 취지로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2020. 7. 2.자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2020. 7. 2.자 각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나) 피고 C은, 2020. 7. 2.자 각 주식매매계약상 1주당 평가금액이 당시 피고 회사의 재정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높게 책정된 점, 위 평가금액은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가액의 8배에 이르므로 피고 C이 위와 같은 가액에 이 사건 주식 일부를 양수하고자 했을 리 없는 점 등에서 위 각 주식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0. 7. 2.자 각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주식 대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인 I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I는 피고 회사의 2019년도 재무제표에 기재된 피고 회사의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9,851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20. 7. 2.자 각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금액 8,000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책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회사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2019년에 비해 2020년 감소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제1심 증인 I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의 경우, 매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갑 제22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위 증언은 믿을 만하므로 I가 택한 평가방식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2020. 7. 2.자 각 주식매매계약상 1주당 가액이 피고 C이 양수했을 리 없을 정도로 높은 가액이라는 피고 C의 주장은, 2020. 7. 2.자 각 주식매매계약서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채무를 독촉하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H에게 이 사건 주식이 피고 C에 환원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위 피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가압류 해제를 목적으로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로 2020. 7. 2.자 각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원고가 위와 같이 I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치 평가를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는 2020. 7. 2.자 각 주식매매계약으로 인하여 123,437,5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상당한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2020. 7. 2.자 각 주식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2020. 7. 2.자 각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주식 매매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가액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상당한 금원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원고와 피고들 모두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C은, 원고가 2020. 9. 29.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들어 2020. 7. 2.자 각 주식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20. 12.경까지 그 이전과 유사하게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피고 C이 단독으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비록 피고 C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에도 그 이전과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특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더라도 급여를 이전과 같이 유지해주겠다는 점에 관한 양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라) 달리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C이 H의 이 사건 가압류 해제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양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 C 명의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2020. 7. 2.자 각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원고와 피고 C이 주고받은 대화나 메시지에 그와 같은 정황을 추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3) 소결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C 명의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주식매매대금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0.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4.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 명의변경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리스이용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명의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은 피고 회사가 자신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이는 상법 제341조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고, 피고 회사 명의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이와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된 이 사건 특약 중 피고 회사와 관련된 부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명의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은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자신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은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고 주장하나,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매매계약은 피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특약은 피고 회사 명의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체결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특약은 원고가 2020. 7. 2.자 각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피고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이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70% [= 기존 보유 주식 150,000주(50%) +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양수한 주식 60,000주(20%)]를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이 상법 제341조에 반하여 무효인 관계로 원고가 여전히 피고 회사의 주주로 남게 되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로서의 제반 권리 행사를 통해 여전히 피고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이상 피고 회사로서는 피고 회사 명의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특약 역시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 중 피고 회사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 회사 명의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과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 명의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면,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특약 중 피고 회사와 관련된 부분인 이 사건 리스계약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부분 역시 무효로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 이행만으로도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30만 주 중 21만 주를 소유하게 되어 피고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C 명의의 2020. 7. 2.자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이 사건 특약도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반소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 제기된 것이어서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가 이에 부동의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회사의 반소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D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금융리스이용자로서 D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고, 리스로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바,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한 본소 중에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 명의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 회사와 D간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사실, 원고의 위 자동차 점유 사실, 피고 회사의 리스로

납부 사실 등에 관한 주장 및 증거가 제출되어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나아가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위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는 한 리스로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며 추후 반소 혹은 별소를 제기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한바,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점유사용권원인 이 사건 특약의 무효 여부 등은 이미 제1심에서의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피고 회사의 반소 제기를 원고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원고의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반소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D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고 있고,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D을 대위하여 위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는 리스이용자인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약 중 이 사건 리스계약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부분이 유효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명의변경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리스로 또는 반환지연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므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회사에게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직 사임 이후인 2020. 9. 말경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이 만료되는 2024. 4. 말경까지 월 리스로 합계 상당 47,600,570원(= 월 리스로 1,106,990원 × 43개월) 및 2024. 4. 30.부터 이 사건 자동차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D에 부담해야 하는 월 반환지연금 상당 2,213,980원(= 월 리스로 1,106,990원 ×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떠한 대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422, 85다카17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아래 다) (1)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2020. 9. 말경 이후에도 2020. 12.경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수익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21. 2. 1.경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2020. 9. 29.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도 원고가 2020. 12.경까지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피고 C 등과의 갈등으로 인해 2020. 12. 하순 무렵 이후에는 피고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2020. 9. 29. 이후에도 적어도 피고 회사에서 사실상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2020. 12.경까지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인

2021. 1. 1.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2021. 1. 1.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 만료일인 2024. 4. 30.까지는 피고 회사가 D에 월 리스료를 지급하면서도 위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고,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완료일까지는 피고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D에 반환지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가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약 중 이 사건 리스계약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부분이 유효한 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발령받아 원고가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에서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명의변경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가 운행정지명령으로 인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자동차를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것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위 자동차의 이용권을 갖는 피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그 손해배상 액수 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D에 지급하는 월 리스료는 1,106,990원이고, 위 계약 만료 이후 D에 지급해야 하는 반환지연금은 월 리스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관 제27조 제3항)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회사에게 위 2021. 1. 1.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 만료일인 2024. 4. 30.까지의 월 리스료 합계 44,279,600원(= 월 리스료 1,106,990원 × 40개월) 및 이 사건 리스계약 만료일 다음 날인 2024. 5. 1.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반환지연금 2,213,980원(= 월 리스료 1,106,990원 × 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그 손해배상 의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 부분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 명의변경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와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채동수

판사남양우

판사홍성욱

별지